

제 1181 호  
1985. 9. 21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도관공무  
편집인 : 공도관리과  
전화 : 731-6111-3  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 
전화 : 735-3357

# 시 보

## 차 례

◎ 고 시

제 624 호 : 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결정 및 변경결정	2
제 625 호 : 도시계획시설 ( 공용의청사, 도로 )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	2
제 626 호 : 도시계획시설 ( 시장 ) 변경결정고시	3
제 627 호 : 도시계획시설 ( 공용의청사 ) 결정고시	3
제 628 호 : 도시계획시설 ( 운동장 ) 변경결정	4

H0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24 호

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결정  
및 변경결정

1.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 
를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 항 및  
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

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법  
제 12 조 4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 
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
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 
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 
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9. 21.

서울특별시장

○ 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결정 및 변경결정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적 (㎡)		비 고
			가 정	변경또는신설	
신설	"	도봉구공릉동 172 일대	-	479,737	개 방 대 학
변경	"	용산구한남동 산 10-83 일대	14,744	0	폐 지
신설	"	관악구봉천동 산 67-32 일대	-	2,800	성 북 학 원
변경	"	강서구신정동 산 109-1 일대	10,512	12,663	명신고교 ( 중 2,151 ㎡ )

도면 :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 생략 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25 호

도시계획시설 ( 공공의청사, 도로 ) 결  
정,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( 공공의청사,  
도로 ) 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  
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 제 1

항에 의거 결정 및 변경결정하였기  
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4 항 및 제 13  
조 제 1 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 9 조  
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  
획과와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  
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 
보인다.

1985. 9. 21.  
서울특별시장

○ 결정,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규 모	비 고
신설	공공의청사	강서구신필동 331-1 일대	32,649.12 ㎡	

구분	시설명	위 치	규 모	비 고
신설	도 로	강서구신월동 331~341-3	B=8M, L=320 M	
가정	"	" 349-4~341-3	B=6M, L=74M	
변경	"	" "	B=8M, L=74M	

○ 결정,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도면: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26 호

도시계획시설(시장) 변경결정고시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

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 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

1985. 9.21  
서울특별시장

○ 변경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규모 (㎡)	비 고
가정	시 장	강남구대치동 937 외 2 필지	9,695.4	84.4.2 결정
변경	"	" " 1 필지	5,956.9	감) 3,738.5 ㎡

○ 변경결정도면: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27 호

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 결정 고시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

한다  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

1985. 9.21  
서울특별시장

○ 결정조서				
구분	시설명	위 치	규모(㎡)	비 고
신설	공용외청사	강서구신정동 915-2 외 1 필지	462.1	신정 5 동사무소
○ 결정도면: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				
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628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변경결정 고시</p> <p>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을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 제 1항에 의거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은평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5. 9. 21. 서울특별시장</p>				
○ 변경결정 조서				
구분	시설명	위 치	규모(㎡)	비 고
가정 변경	운동장	은평구신사동 98-17 외 3 필지	20,558 0	정 구 장 제 지
○ 변경결정도면: 별첨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				